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00호 2022. 12. 15. (목)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632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633호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장수군 조례 제2634호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장수군 조례 제2635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장수군 조례 제2636호	장수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34
장수군 조례 제2637호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45
장수군 조례 제2638호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1200호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6
장수군 공고 제2022-1209호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3
장수군 공고 제2022-1218호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8
장수군 공고 제2022-1219호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86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169호	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	95
장수군 고시 제2022-170호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96
장수군 고시 제2022-175호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군도12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7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632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민관계에서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외관계”를 “대내관계”로 변경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당직수당 지급구분표(제7조 제4항 관련)

구분	단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u>60,000원</u>
숙직비	1야당	<u>60,000원</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민 관 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외 관 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td> </tr> </tbody> </table>	대 민 관 계	대 외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p>【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민 관 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내 관 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삭제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대 민 관 계	대 외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별표 4】 당직수당 지급구분표(제7조 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단위</th> <th style="width: 33%;">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일직비</td> <td>1일당</td> <td>50,000원</td> </tr> <tr> <td>숙직비</td> <td>1야당</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50,000원	숙직비	1야당	50,000원	<p>【별표 4】 당직수당 지급구분표(제7조 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단위</th> <th style="width: 33%;">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일직비</td> <td>1일당</td> <td><u>60,000원</u></td> </tr> <tr> <td>숙직비</td> <td>1야당</td> <td><u>60,000원</u></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u>60,000원</u>	숙직비	1야당	<u>60,000원</u>
구분	단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50,000원																	
숙직비	1야당	50,000원																	
구분	단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u>60,000원</u>																	
숙직비	1야당	<u>60,000원</u>																	

1. 개정이유

-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발맞춰 공직자 행동률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장수군의 근무 여건, 교통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비 기준액 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행동률 일부 수정 (별표2)
 - 대민관계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삭제
 - “대외관계”를 “대내관계”로 변경
- 당직수당 지급구분표 일부 수정 (별표4)
 - 지급액 변경

장수군 조례 제2633호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정상 : 그 밖에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고질 민원 해결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팀장, 주무관)에 군수가 포상 수여시 지급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7조의2제3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실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과장 및 사업소장”을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제3항 관련)

공모사업, 상사업비 적용 기준(현행과 같음)

적용기준 적용대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비 고
공모사업	500,000원	350,000원	250,000원	150,000원		1명당
상사업비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50,000원	1명당

※ 사업비의 적용기준은 군비 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군정상 적용 기준(추가)

지급대상 수상별	계	팀장	팀원1	팀원2	비 고
최우수팀	300,000원	120,000원	90,000원	90,000원	1명당
우수팀	200,000원	80,000원	60,000원	60,000원	1명당

【별지 제5-2호서식】

군정상 실적 제출 서식

실적 제목	
부서명	○○실·과소, ○○읍면
주요내용	○ 휴먼명조 13
주요성과	○ 휴먼명조 13

20 . . .

신청자(담당자) : (인)

확인자(부서장) : (인)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 포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공적심의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포상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정상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제7조의2제1항제3호)
 - 수상자(팀장 및 팀원)에 지급 가능함을 명시
- 군정상 포상절차 조항 신설 (제9조제4항)
 - 군정상 포상신청 방법 추가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제10조제2항)
 - 심사위원 추가 변경(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
- 군정상 포상금 지급기준 내용 추가 (별표 1)
 - 군정상 수상팀의 팀장, 팀원별 포상금 금액 규정
- 군정상 실적제출용 서식 신설 (별지 제5-2호서식)

장수군 조례 제2634호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급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이·미용권을 대상자”를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 (이하 “장수사랑 이·미용권”으로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매년 이·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미용권을 각 읍면장을 통해 매 분기 첫달 5일부터 분기별료”를 “지원금을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로, “지급한다”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③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이·미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이·미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미용권 대상자는”을 “장수사랑”으로, “이·미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를 “결제를 진행”으로 한다.

① 장수사랑 이·미용권은 군 내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지원금은 반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이·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장수사랑 이·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사랑 이·미용권 재발급 신청서

구 분	장수사랑 이·미용권 재발급 신청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발급사유		
<p>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장수사랑 이·미용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 또는 서명)</p> <p>장 수 군 수 귀하</p>		
<p>※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생략)</p> <p>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이·미용권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지급시기) 군수는 <u>이·미용권을 각 읍면장을 통해 매 분기 첫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u></p> <p><신 설></p>	<p>제2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방법) ① -- <u>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이하 “장수사랑 이·미용권”으로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u> -----.</p> <p>② <u>군수는 매년 이·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지급시기) ① -- <u>지원금을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u> ----- ----- ----- <u>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u></p> <p>② <u>군수는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u></p>

이·미용업소 사업주와 이·미용비, 할인 금액의 책정 및 이·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이·미용비 청구 등) ① 이·미용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대상자가 사용한 이·미용권 및 사업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이·미용비를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용업소 사업주

이·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환수처리 등) -----

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제10조(이·미용권 수불 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이·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미용권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삭제>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장수사랑 이·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개정이유

-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방법을 기존 ‘이·미용권’에서 ‘장수사랑 이·미용권’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미용권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 변경 (제4조)
 - 이용권을 장수사랑 이·미용권으로(장수사랑 상품권 및 바우처 카드)로 변경
-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 변경 (제5조)
 - 지원기준일 ‘매 분기 첫달 5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
 - 장수사랑 이·미용권 배부·관리와 재발급에 관한 내용 신설
- 장수사랑 이·미용권 사용에 관한 내용 변경 (제6조)
 - 사용기한을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변경
-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변경 (제7조)
- 이·미용권 청구와 이·미용 수급 관리에 관한 내용 삭제 (제8조, 제10조)
- 해지 사유 추가 (제9조)
 -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 장수사랑 이·미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 신설 (제11조)
- 장수사랑 상품권 준용 조항 신설 (제12조)

장수군 조례 제2635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이란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매분기 첫 달 1일”을 “매년 1월 1일”로, “현재 변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을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율”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율”로 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목욕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지원기준일”을 “매분기 첫달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③ 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욕”을 “장수사랑 목욕”으로, “목욕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을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목욕 이용권을 양도”를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양도”로, “목욕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를 “결제”로 한다.

①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협약이 체결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장수군 내의 목욕 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목욕”을 “장수사랑 목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

구 분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발급사유		
<p>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 또는 서명)</p> <p>장 수 군 수 귀하</p> <p>※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이란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분기 첫 달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번압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	제3조(대상자) ① ----- ----- ----- 매년 1월 1일----- ----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 ----- ----- ----- ----- ② ----- ----- -----

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4조(지원기준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는 대상자가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우대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할인금액”이라 한다)으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 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목욕 이용권을 면장

----- 월할 계산하여
지원을 -----

제4조(지원기준 등) ① -----

---- 목욕비-----

<삭 제>

<삭 제>

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

----- 매분기 첫달 1일-----

-----.

②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

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수령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 이용권을 배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대상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목욕 이용권 배부대장에 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을 받아 배부하고, 배부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목욕장 이용) ①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사용하여 할인금액을 지불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목욕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목욕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

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③ 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제6조(목욕장 이용) ①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협약이 체결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장수사랑 목욕 -----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

③ -----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양도-----

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목욕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목욕장 사업주와 목욕비, 할인 금액의 책정 및 목욕 이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목욕비 청구 등) ① 목욕장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 이용권 및 사업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급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제7조의 협약에 따라 할인된 목욕비를 목욕장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결
제-----
-----.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장수군 내의 목욕 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p>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p> <p>1.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9조(환수처리 등) ----- ----- ----- ----- ----- ----- -----</p> <p>1. 장수사랑 목욕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u></p> <p>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u>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준용) <u>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u></p>
--	---

1. 개정 이유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방법을 기존 ‘목욕이용권’에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에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신설 (제2조)
- 대상자에 대한 내용 변경 (제3조)
 - 지원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
 - “현재 변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서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으로 변경
- 지원 절차 관련 내용 변경 (제5조)
 -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배부·관리 및 재발급 관련 내용 신설
- 목욕장 이용 내용에 관한 변경 (제6조)
 -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까지’로 변경
- 협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제7조)
- 목욕비 청구 등 삭제 (제8조)
- 환수 사유에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추가 (제9조)
-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 신설 (제10조)
- 장수사랑 상품권 준용에 관한 내용 신설 (제11조)

장수군 조례 제2636호

장수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장수군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 아동센터”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아동의 가족
-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 3. 이장·반장
- 4. 담당공무원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

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대상자는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아동급식 업무담당 과장, 보건의료원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 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안전 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

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장수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4조(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input type="checkbox"/>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부식 배달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장수군수 귀하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장수군수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해 위임된 아동 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신청 절차, 조사,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제7조)
- 아동 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조)
-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5조)

장수군 조례 제2637호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제6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
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
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3조(기금관리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장수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제1조~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조)
-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7조)

장수군 조례 제2638호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019년에는 월 164만 6,730원으로 하되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월 191만 2,680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구성된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2026년 장수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연도 및 금액 현행화 (제3조제2항)

장수군 공고 제2022-120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 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보장
- 나. 국도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서 제외되는
해태망(노루망)등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조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시행규칙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로 변경
- 나.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군비 지원 근거 마련
 - 다. 유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분담률 지정 : 지원 60%이내
 - ※ 국도비와 동일 지원비율 적용
 - 라.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금액 지정 : 1농가당 500만원이내
 - 마. 피해예방시설 지원 우선순위 선정, 종류 명확화
 - 바. 기타 조항 및 오탈자 수정, 법령용어 순화
 - 사. 조항 정리(위원회 조항 삭제)

3. 관계법령 (붙임)

- 1)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2)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 2) 팩 스 : 063-350-5718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전화 063-350-25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을 ““피해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을 “피해보상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농업인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등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등의 경작지역
2.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등의 경작지역
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접수 한 때에는 [별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u>농작물 등 피해보상</u>”이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p> <p>4.“<u>농업인</u>”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제3조제2호<u>가목</u>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대상) ① (생략)</p> <p>②<u>군수</u>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p>	<p><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u>피해보상</u>”이란 ----- ----- -----.</p> <p>4.----- ---- 등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 ----- -----.</p> <p>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u>장수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 ----- -----.</p>

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제8조(피해보상) ① 피해보상액-----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등별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등의 경작 지역
2.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등의 경작지역

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5.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다수의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p>제10조(구제보상 사업) 유해야생 동물 구제 보상은 장수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까치·고라니·멧돼지에 한하며,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p> <p>제11조(보상단가) 유해 야생동물 보상단가는 <u>[별표]</u> 야생동물 보상기준에 의한다.</p> <p>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제10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구제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u>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상대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보상에 따른 보상대금 신청서를 <u>접수 한 때에는</u> <u>[별표]</u> 기준에 의하여 보상대금을 결정하고 보상대금을 지급한다.</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제10조(구제보상 사업) ----- ----- ----- ----- ----- ----- <u>범위</u>----- -----.</p> <p>제11조(보상단가) ----- ----- <u>별표</u> ----- -----.</p> <p>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 ----- <u>별지 제1호서식</u>----- ----- -----.</p> <p>제13조(보상대금 지급) ----- ----- ----- <u>접수한 때에는 별표</u> ----- ----- -----.</p>
---	---

<p>제14조(시행규칙) 이 <u>조례의 시행</u> <u>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 <u>조례 시행에</u> ----- -----.</p>
---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6조1항”을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별지 제 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 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대상지 조사) ① <u>조례 제6조1항</u>에 따라 현장조사 “<u>별지 제 2호서식</u>”을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u>별지 제 1호서식</u>”을 작성하여 <u>군수</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u>별지 제4호서식</u>”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 (목적) ----- 「<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u>」-----</p> <p>-----</p> <p>-----</p> <p>-----</p> <p>-----</p> <p>제2조 (대상지 조사) ① 「<u>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6 <u>조제1항</u>--- <u>별지 제2호서식</u>---</p> <p>---- <u>별지 제1호서식</u>을 작성하여 <u>장수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p> <p>② -----</p> <p>----- <u>별지 제4호서식</u>-----</p> <p>-----</p> <p>-----</p> <p>-----</p>

제3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장수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보상
 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위원
 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 3호서식”을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
 에 따라 당해 연도말까지 현금
 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
 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
 연직은 산림과장, 농업정책과
 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으
 로 하고 위촉직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4.
 02.25 제1036호, 장수군 행정기
 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
 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
 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
 ----- 해당 -----
 -----.

③ 거짓-----

 -----.

<삭 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 02.25 제103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태보전팀장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장수군 공고 제 2022-1209호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2019. 12. 2.) 이후 변화된 우리 지역 청년 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장수군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장수군 청년정책 및 청년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협의체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의2)
 - 청년협의체 위원의 세부 활동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
- 청년협의체 사항 신설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2. 12. 6. ~ 2022. 12. 26.

라.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전화 : 063-350-2192, 팩스 : 063-350-5708)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 업무담당자
(전화 : 063-350-21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참 여”를 “참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수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기능수행

② 협의체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본문 중 “회의”를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2-1218호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지역주민의 생명존중의식 확산과 자살시도자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7조 ~ 제8조)
-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센터 (전화 063-350-2802, 팩스 063-350-574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담당자(전화 : 063-350-28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2.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의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4.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자살관리 상담
 -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22-1219호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다. 위탁의 취소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센터 (전화 063-350-2802, 팩스 063-350-574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담당자(전화 : 063-350-28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둔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장수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약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

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신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장수군 고시 제2022 - 169호

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3차)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명칭 : 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거점인 장계면 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기초 기능 활성화
3. 사업위치 : 장수군 장계면 일원
4. 사업비 : 6.767백만원(국비 4,049, 도비 521, 군비 2,197)
5.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행복나눔터, 문예복지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복합문화마당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견학,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지원 등
7. 사업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8.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063-3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고시 제2022 - 170호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2차)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명칭 :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거점인 계북면 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기초 기능 활성화
3. 사업위치 : 장수군 계북면 일원
4. 사업비 : 4,830백만원(국비 2,817 도비 364 군비 1,649)
5.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행복나눔터 신축,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교육·건강, 프로그램,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7. 사업시행자 : 장수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8.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063-3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고시 제2022-175호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군도12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561-1번지 일원의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장 수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m)
신설	군도	12호선	천천-계남 (레드푸드 진출입로)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화양리	12,349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561-1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485-2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화양리	239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본 도로구역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장수를 찾는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장수군 건설교통과(☎063-350-2578)

6.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사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10	보조 간선 도로	239	계남면 화양리 1561-1	계남면 화음리 1485-2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1-1	○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239m	○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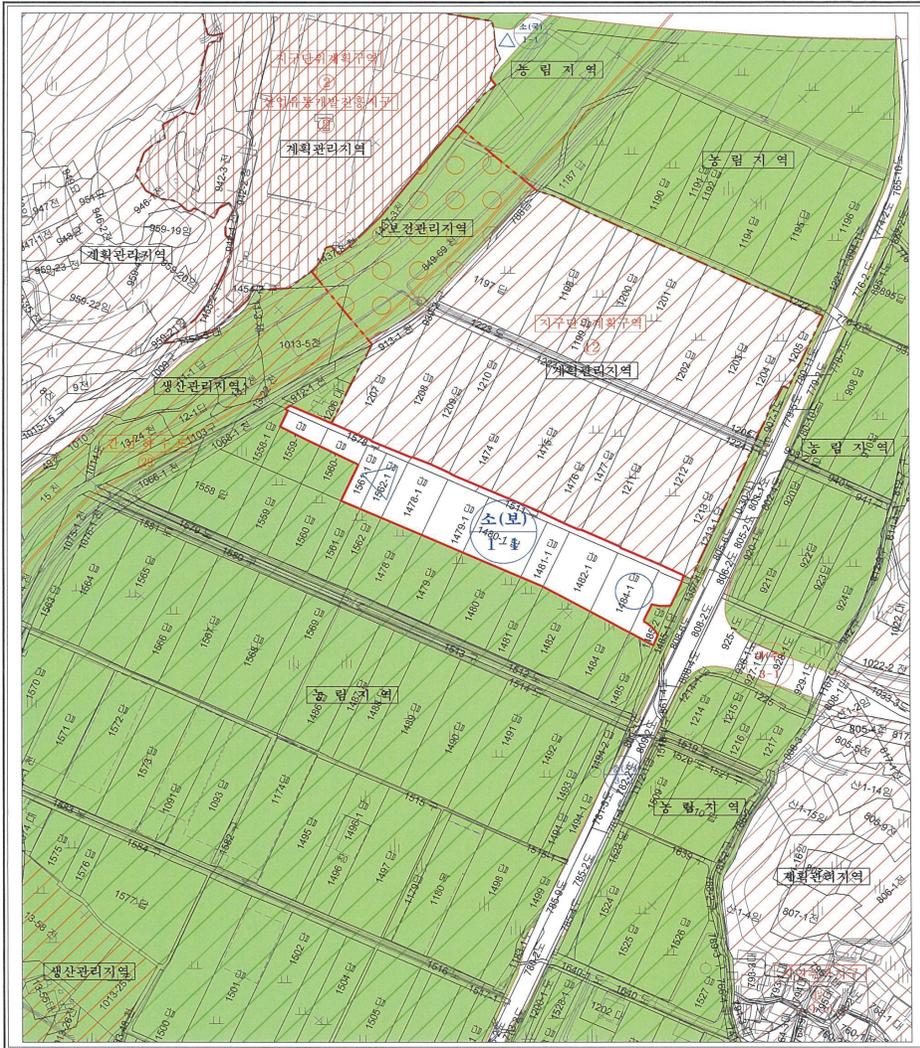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1	계남면 화양리	1559-1	답	1,316.7	403.0	김○남	장수군 계남면 ***					
2	계남면 화양리	1560-1	답	1,292.1	432.0	김○남	장수군 계남면 ***					
3	계남면 화양리	1561-1	답	607.0	607.0	장수군	-					
						양○철	계남면 화양리 **					
						양○권	계남면 화양리 ***					
4	계남면 화양리	1562-1	답	687.9	687.9	양○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양○철	장수군 계남면 ***					
						양○만	계남면 화양리 ***					
5	계남면 화양리	1578	구거	372.3	372.3	국 (농림축산식품부)	-					
6	계남면 화음리	1478-1	답	1,300.4	1,300.4	김○태	장수군 장계면 ***					
7	계남면 화음리	1479-1	답	1,336.2	1,336.2	최○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			농업 기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8	계남면 화음리	1480-1	답	1,865.4	1,865.4	최○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			농업 기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9	계남면 화음리	1481-1	답	711.7	711.7	장수군	-					
10	계남면 화음리	1482-1	답	1,617.3	1,617.3	정○택	익산시 마동 ***					
11	계남면 화음리	1484-1	답	1,444.8	1,444.8	정○숙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					
12	계남면 화음리	1485-2	답	1,066.7	661.0	장수군	-					
13	계남면 화음리	1511	구거	910.0	9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출입도로 개설사업
지형도면고시도



※규회 변경사항에 한하여 유효함
장수군 고시 제2022- 호
2022년 월 일

축척 1:1,200



구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재)국경건설 엔지니어링	장수군	장수군
직위	대표이사	도시팀장	건설교통과장
직명	-	지방시설6급	지방시설5급
성명	박동우	박정환	윤성병
확인인			
	확인자	장수군	
	지방시설7급	임승현	

· 지정권자: 장수군수
· 지정일자: 월 일
· 고시년도: 2022년
· 고시번호: 장수군 고시 제2022- 호
· 작성자: 장수군
· 작성일자: 2022년 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장수군수

색인도

1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